

- 수도권 외의 지역 소재
- 전용면적 85m^2 ·취득가액
6억원 이하
-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
유상거래(부담부증여 제외)로
취득(법인·단체가 취득하는 경우
제외)하는 아파트로서 실제
입주한 기간(제1항제4호에 따른
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 입주한 기간
제외)이 1년 미만인 아파트
 - (감면율) 취득세 최대 50%
감면(법25%+조례25%)
 - (일몰기한) 2026. 12. 31.

□ 개정내용

- ① (사업주체)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를 2년이상 임대로
제공시 원시취득세 최대 50%(법25%+조례25%) 감면 1년 연장
- ② (개인 구입자)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를 사업주체로부터
최초로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최대 50%(법25%+조례
25%) 감면 신설

□ 적용요령

- ① (사업주체)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(부칙 §1)
- ② (개인 구입자) 공포한 날부터 시행(부칙 §1)
 - 시행일(공포일)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(부칙 §2)